

국제공인시험기관 업무재개

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(시험·검사기관 인정)와 「공인기관인정제도 운영요령」 제29조(인정취소 등) 규정에 의거 인정정지 하였던 국제공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인정재개를 공고합니다.

2012년 4월 9일

한 국 인 정 기 구 장

인정번호	기관명	대표자	법인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법인주소 (사업장소재지)	인정재개분야
KT033	고려아연(주)	이재중	110111-0168404 (610-85-00992)	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42 (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505)	2.013(석유제품)

부칙 :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. 끝.